

## 근로시간면제한도 노사합의서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(이하 '재단')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 (이하 '조합')은 단체협약 제9조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근로시간 면제한도시간은 연간 총 2,000시간으로 하며, 사용대상자는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(2명)으로 한다.
2.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재단과의 협의·교섭, 고충처리,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 유지·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3. 노동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자의 명단 및 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근로시간면제자 및 그 한도를 변경할 때에는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.
4. 재단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, 연차휴가는 일반 직원에 준하여 부여한다.
5.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른다.

2023. 12. 21.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

이사장

김병삼

위원장

이희욱